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”을 “증표(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별지 제7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”를 “변경하려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허가관청”을 “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”으로 한다.

제60조의2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0 제8호나목1)사) 전단 중 “식육판매시설”을 “판매시설”로, 같은 사) 전단 중 “식육을”을 “식육 또는 포장육을”로 하며, 같은 사) 후단 중 “식육”을 “축산물”로 하고, 같은 사) (3) 중 “식육을 섭씨 10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”을 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”으로 한다. 별표 10 제9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시설기준의 적용특례

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「민

법」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)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.
- 2) 판매차량에는 칼·도마 등을 세척·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, 진열상자,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.
- 3)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,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.
- 4)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5)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.

별표 12 제4호거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록관리시스템 설치·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

을 활용할 수 있다.

별표 13 제3호머목11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기록관리시스템 설치·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품목제조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보고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
영업소	명칭(상호)	영업허가번호
	소재지	
제품정보	품목의 유형	주원료의 유형(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제품명	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(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소비가한 제조일부터 일(월, 년)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(뒤쪽에 작성)
	용도·용법	
	보관방법 및 포장재질	
	포장단위	
	성질·상태(성상)	
	품목의 특성	
	·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	·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기타	· 살균·멸균 제품 해당 여부 []비살균 []살균 []멸균	
	· 고열량·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	·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	·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	·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[]에 []아니오	
	·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
	- []영양성분 조절 제품, []경도 조절 제품, []점도 조절 제품, []해당 없음	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년 월 일

보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조방법설명서 1부 2.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(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소비기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소비기한의 설정 사유서 1부 4. 삭제 <2020. 4. 16.>
------	---

1.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

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5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2. 축산물의 영양성분

※ 작성방법

가. '내용량'란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.

① 총 내용량당 [] ② 100(g 또는 mL)당 [] ③ 단위 내용량당 []

나. 가목에 따라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'총 내용량' 또는 '단위 내용량'을 적습니다.

1) ① 또는 ②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만 적습니다.

2) ③ 방법으로 '내용량'을 적은 경우에는 '총 내용량'과 '단위 내용량'을 모두 적습니다.

번호	영양성분	내용량	번호	영양성분	내용량
1	열량	kcal	6	트랜스지방	g
2	나트륨	mg	7	포화지방	g
3	탄수화물	g	8	콜레스테롤	mg
4	당류	g	9	단백질	g
5	지방	g	10	그 밖의 영양성분	

총 내용량: (g 또는 mL)

단위 내용량: (g 또는 mL)

유의사항

1.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는 품목제조보고번호의 규칙(영업인허가번호 11자 - 품목번호 1~ 5자)에 맞아야 하며, 기존에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.
3. 배합비율 표시는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표시·광고 시 특정 성분을 강조한 경우(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)만 해당합니다.
4. '축산물의 영양성분'란은 앞쪽의 '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'란에 '예'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.

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보고인	성 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영업소	영업소 명칭(상호)	영업허가번호
	영업소재지	

영업의 종류		
--------	--	--

변경품목	제 품 명	품목보고번호
------	-------	--------

변경사항	변 경 전	변 경 후
제 품 명		
소 비 기 한		
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	뒤쪽에 기재	

변경사유	
------	--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소비가한 변경 근거서류(소비가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)

변경 전			변경 후		
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	번호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	배합비율 (%)
1			1		
2			2		
3			3		
4			4		
5			5		
6			6		
7			7		
8			8		
9			9		
10			10		
11			11		
12			12		
13			13		
14			14		
15			15		
16			16		
17			17		
18			18		
19			19		
20			20		
21			21		
22			22		
23			23		
24			24		
25			25		

유의사항

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**제품생산 개시 전**이나 **제품생산 개시일**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)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<u>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</u> 따르고, 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증표는 <u>별지 제7호의2서식에</u> 따르며,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증표는 <u>별지 제7호의3서식에</u> 따른다.	제19조(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) ----- ----- <u>증표(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별지 제7호서식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7조(품목제조의 보고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<u>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</u>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에 소비기한 변경 근거서류(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<u>허가관청에</u>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	제37조(품목제조의 보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변경하려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</u> ---. ---- -----

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60조의2(규제의 재검토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제7조의8제2항 및 별표 14의 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: 2022년 7월 1일

2.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: 2022년 7월 1일

3. (생략)

4. 제3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: 2014년 1월 1일

5. 제31조에 따른 영업의 변경 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: 2014년 1월 1일

6. (생략)

7. 제36조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: 2014년 1월 1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0조의2(규제의 재검토) -----

-----.

<삭제>

<삭제>

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u>일</u> <u>8. 제50조의5 및 별표 11의2에</u> <u>따른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</u> <u>분 기준: 2022년 7월 1일</u> 9. · 10. (생 략)	<u><삭 제></u> 9. · 10. (현행과 같음)
---	--